

☞ 혜택과 가산세



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 혜택은?

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(연간 한도 100만원)

신고간편 부가가치세 신고서(합계표)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액만 기재
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불필요

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·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 작성·송달·보관 비용 절감

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·미전송 시 가산세는?

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

구분	내용	발급자	수취자
미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*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	2%	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
지연발급	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	1%	1%
지연전송	발급일의 다음날 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) 2013.3.5. 발급한 경우, 2013.3.7.~2013.7.11. 까지 전송	0.1%	-
미전송	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) 2013.3.5. 발급한 경우, 2013.7.11. 까지 미전송	0.3%	-

* 과세기간 내 발급이란? 1월~5월 거래분은 6.30.까지 발급,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.10.까지 발급

☞ 기타 자주하는 질문



Q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?

■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세로에 전송하시면 됩니다.

* 매입자는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수신의제규정 :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e세로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10항)

Q 발급·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?

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전송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하며,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* 단, 신고·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

Q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?

■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되는 것은 **표준규격***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입니다.

*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항목·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

■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**발급기한 내에 재발급** 하여야 하며, 발급·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2014년 7월 1일부터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

(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)



발급 대상자와 방법

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?

- 법인**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
- 개인**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

공급가액 기준연도	기준금액	전자발급 의무기간
2012년	10억원 이상	2013. 7. 1. ~ 2014. 6. 30.
2013년	3억원 이상	2014. 7. 1. ~ 2015. 6. 30.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?

①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

-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**e세로** 홈페이지(www.esero.go.kr)
-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(ASP)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
-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(ERP)

②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

-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모바일 e세로 홈페이지에서 "발급서비스" 선택

③ 기타 발급방법(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)

-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(☎126-내선3)를 통해 발급
 - 거래관련 증빙서류*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
- * 거래계약서, 거래내역서, 무통장입금증 등

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절차



공인인증서 준비
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전자서명)을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필요
- *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**보안카드**를 발급받아 **e세로** 홈페이지에서 **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**

회원가입

- 국세청이 운영하는 e세로(www.esero.go.kr)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

발급

-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*에 표준에 따라 생성(전자서명 필수)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
- *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**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**하며,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!

전송

-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**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**
- * e세로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없음

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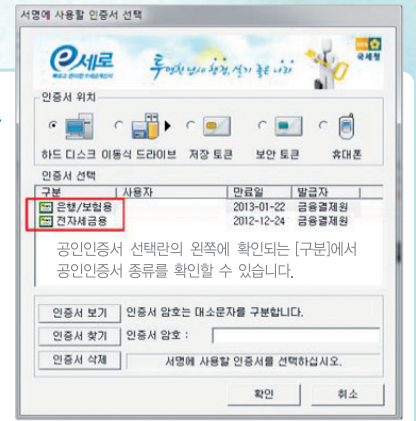
- 월별·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
- * e세로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

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

-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
- * 법인사업자 : 연간 4회(1월, 4월, 7월, 10월) / 개인사업자 : 연간 2회(1월, 7월)
- 신고서 작성시 e세로에서 "부가세 신고용 합계표"를 조회하여 작성하면 편리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가능(연간한도 100만원)

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종류

- 사업자범용·전자세금계산서용·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
- * 금융용·홈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, e세로 회원가입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 불가



공인인증서 발급방법

- 공인인증서는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예시) 은행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방법

기업 인터넷 बैं킹을 사용 중인 경우

- 해당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[공인인증센터]에서 [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] 발급

기업 인터넷 बैं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

- 기업인터넷 बैं킹을 신청 하고자 하는 은행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[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] 발급

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



- e세로 로그인 → [발급·수정] → [건별발급] 클릭
- 세금계산서 종류 : 일반, 영세율, 위수탁, 위수탁 영세율 중 선택
- 공급받자 구분 선택 : 사업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 중 선택
- 공급받자 입력 : 공급받자 등록번호(**확인** 버튼 클릭), 상호, 성명, 주소, 업태, 종목, 이메일 입력
- 작성일자 입력
- 품목, 규격, 수량, 단가, 공급가액, 세액 입력
- 발급 : 공인인증서 암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

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

- 이메일 주소를 정정하여 당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송하여야 함

다시 발급할 경우 **이중발급이 되므로 주의!**

- * e세로에서 발급한 경우 재발송 방법 : [발급·수정] → [메일관리(재발송)]에서 이메일주소 정정 후 재발송 클릭